공 개

의안번호	제 352 호
의 결 연 월 일	2026. 7. 31. (제 14 차)

의결사항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7. 31.

1. 의결주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동 개정안은「신용협동조합법」개정안이 공포('26.04.21)되어 시행 예정('26.10.22)임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상임감사 의무선임 기준 및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매입 대상 자산 등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임.

첫째, 법 제80조의8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매입 대상 자산을 조합 등의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경영관리·재무상태 개선조치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고정자산 등으로 규정하고, 인수된 부실자산의 인수가격 산정기준을 감정평가 가격 등으로 구체화한다.

둘째, 신용협동조합 상임감사 선임기준을 구체화한다. 법 제27조제8항에 따른 상임감사 의무선임 조합을 자산총액 3천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으로 규정하고, 상임감사 임의선임 조합을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이나 조합 이사회가 건전성 관리, 내부통제 강화 및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상임감사의 선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합으로 규정한다.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참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6. 6. 5. ~ 7. 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제14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026.7.23.) 심의필

< 별지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7조제8항에 전단 중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조합 중 자산규모, 조합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을 말한다.

제1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27조제8항에 전단 중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이나, 조합 이사회가 건전성 관리, 내부통제 강화 및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상임감사의 선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합을 말한다.

제19조의17 및 제19조의1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17(비업무용 자산) 법 제80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80조의8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2. 조합이 법 제86조에 따른 경영관리 및 법 제89조제4항에 따른 재무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고정자산(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조합이 합병·사업양도·계약이전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고정자산

4. 법 제80조의8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영개선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고정자산

제19조의18(부실자산 인수가격의 산정 등) ① 법 제80조의8제1항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이하 “관리회사”라 한다)가 법 제80조의9에 따라 법 제80조의8제1항에 따른 부실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에 그 인수가격은 인수대상인 부실채권의 담보물건 또는 비업무용 자산에 대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가격 등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선순위의 채권·물권 및 임차권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실자산의 가격을 사전에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인수계약 체결 시 부실자산의 인수가격과 처분가격간의 차액을 사후에 정산하는 것을 계약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제24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관리회사는 법 제80조의9에 따른 부실자산의 매입·매각, 보전·추심 등 관리회사의 업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이사장 등을 상임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조합 등의 범위 등) ① ~ ③ (생 략) ④ 삭 제 ⑤ 법 제27조제8항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2천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은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3호가목, 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단체조합으로서 해당 조합의 특성,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조합은 상임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이사장 등을 상임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조합 등의 범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⑤ 법 제27조제8항에 전단 중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조합 중 자산규모, 조합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을 말한다. ---------- ---------- ---------- ---------- ---------- ---------- ----------. ⑥ 법 제27조제8항에 전단 중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이나, 조합 이사회가 건전성 관리, 내부통제 강화 및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상임감사의 선

	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합을 말한다.
<신 설>	제19조의17(비업무용 자산) 법 제80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80조의8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2. 조합이 법 제86조에 따른 경영관리 및 법 제89조제4항에 따른 재무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고정자산(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조합이 합병·사업양도·계약이전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고정자산 4. 법 제80조의8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영개선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고정자산
<신 설>	제19조의18(부실자산 인수가격의

	산정 등) ① 법 제80조의8제1항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이하 “관리회사”라 한다)가 법 제80조의9에 따라 법 제80조의8제1항에 따른 부실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에 그 인수가격은 인수대상인 부실채권의 담보물건 또는 비업무용 자산에 대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가격 등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선순위의 채권·물권 및 임차권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실자산의 가격을 사전에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인수계약 체결 시 부실자산의 인수가격과 처분가격 간의 차액을 사후에 정산하는 것을 계약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제2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④ (생 략)	제2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관리회사는 법 제80조의9에 따른 부실자산의 매입·매각, 보전·추심 등 관리회사의 업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별첨】

관 련 법 규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임원) ① ~ ⑦ (생략)

⑧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조합 중에서 자산의 규모, 조합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은 제1항의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두어야 하고,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은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상임감사는 조합원이 아닌 자로 한다.

제80조의8(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설립) ① 조합 및 중앙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80조의9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조합등이 보유하는 부실채권 및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이하 "관리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조합
2. 중앙회
3. 중앙회가 출자한 회사

② 관리회사는 조합등의 출자로 설립한다.

③ 관리회사에 관하여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0조의9(업무) 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합등의 부실자산 매입 및 매각
2. 인수한 부실자산의 보전·추심(가압류, 가처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및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 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 조사
3. 인수한 부실자산의 처리를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부실자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담보 부동산의 취득
 나. 담보 부동산의 가치를 보전·증대하기 위한 부동산의 매입·대여·개발 처분
 다. 인수한 부실자산의 출자전환에 따른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의 인수
4. 조합등의 부실자산의 보전·추심 수임(受任)
5. 조합등으로부터 채무관계자에 대한 신용조사·채권추심 수임
6. 합병 또는 계약이전 등 구조조정을 도모하는 조합과 경영개선을 도모하는 조합등의 자산의 관리·매각 및 매매의 중개
7. 조합등이 위탁한 업무용·비업무용 자산의 공매(公賣)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재산의 매입과 개발
9. 조합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0. 관리회사의 업무 수행에 따른 출자 및 투자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
12. 그 밖에 부실예방 및 부실자산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승인하는 업무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상호금융팀	중소금융감독국
연 락 처	02-2100-1661	02-3145-6772